

장성군의회 의원 행동강령에 관한 조례안 일부 개정조례안

「장성군의회 의원 행동강령에 관한 조례」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들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「지방자치법」 제66조의2 및 「장성군의회 회의 규칙」 제20조의5에 따라 아래와 같이 입법예고합니다.

2018년 10월 12일

장 성 군 의 회 의 장

1. 조례명 : 장성군의회 의원 행동강령에 관한 조례안 일부 개정조례안

2. 제안이유

-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 내용을 본 조례에 반영하여 음식물·경조사비·선물 등의 가액 범위를 명확하게 하고자 함

3. 주요내용

- 별표 1 내용 변경
 - 음식물 : 3만원 → 3만원
 - 경조사비 : 10만원 → 축조의금 5만원, 단 화환·조화 10만원
 - 선물 : 5만원 → 5만원, 단 농수산물가공품 10만원

4. 참고사항

- 관계법령 :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(일부개정 2018. 1. 17.)

5. 공고기간

- 공고기간 : 2018. 10. 12. ~ 2018. 10. 16.(5일간)
- 공고장소 : 장성군의회 홈페이지 게시판(공지사항)

6. 조례안(별표 1) : 붙임

7. 의견 제출

-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·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10월 16일 18:0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장성군의회의회장(참조 의회사무과장)에게 방문, 우편 및 팩스를 통하여 서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-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(찬·반 여부와 그 사유)
- 성명, 주소, 연락처(법인·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)
- 기타 사항은 장성군의회 의회사무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※ 우 57219 전남 장성군 장성읍 영천로 200 의회사무과
- 받는 사람 : 장성군의회의회장(참조 의회사무과장)
- 전화 061)390-7504, 팩스 061)390-7595

[별표 1]

음식물·경조사비·선물 등의 가액 범위(제11조제3항제1호관련)

구분	가액 범위
1. 음식물: 제공자와 의원이 함께 하는 식사, 다과, 주류, 음료,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	3만원
2. 경조사비: 축의금·조의금은 5만원. 다만, 축의금·조의금을 대신하는 화환·조화는 10만원	5만원 (10만원)
3. 선물: 금전, 유가증권, 제1호의 음식물 및 제2호의 경조사비를 제외한 일체의 물품,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은 5만원. 다만, 「농수산물 품질관리법」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농수산물(이하 "농수산물"이라 한다) 및 같은 항 제13호에 따른 농수산가공품(농수산물을 원료 또는 재료의 50퍼센트를 넘게 사용하여 가공한 제품만 해당하며, 이하 "농수산가공품"이라 한다)은 10만원	5만원 (10만원)

비고

가. 제1호, 제2호 본문·단서 및 제3호 본문·단서의 각각의 가액 범위는 각각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.

나. 제2호 본문의 축의금·조의금과 같은 호 단서의 화환·조화를 함께 받은 경우 또는 제3호 본문의 선물과 같은 호 단서의 농수산물·농수산가공품을 함께 받은 경우에는 각각 그 가액을 합산한다. 이 경우 가액 범위는 10만원으로 하되, 제2호 본문 또는 단서나 제3호 본문 또는 단서의 가액 범위를 각각 초과해서는 안된다.

다. 제1호의 음식물, 제2호의 경조사비 및 제3호의 선물 중 2가지 이상을 함께 받은 경우에는 그 가액을 합산한다. 이 경우 가액 범위는 함께 받은 음식물, 경조사비 및 선물의 가액 범위 중 가장 높은 금액으로 하되,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가액 범위를 각각 초과해서는 안 된다.